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76

발의연월일: 2025. 3. 6.

발 의 자: 오세희·허성무·박지원

이재관 · 장종태 · 양부남

강준현 · 정일영 · 김승원

어기구 · 김 윤 · 김기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신용보증재단의업무구역으로 하고, 재단 설립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신용보증재단이 2022. 11. 22.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되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서 특별자치시가 제외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설립 시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재단 운영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및 제9조제1항).

법률 제 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광역시·도"를 "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역시장·도지사"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	제5조(업무구역)
<u>광역시·도</u> 또는 특별자치도	- <u>광역시·특별자치시·도</u>
(이하 "시·도"라 한다)를 업무	
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	제9조(설립) ①
면 특별시장・ <u>광역시장・도지</u>	<u>광</u> 역시장·특별
<u>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u> 자치시장 • 도지사</u>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	
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	
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